

15. 農漁村特別稅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5-108號 1995. 12. 13

1. 개정취지

조세감면규제법에 신설된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하여 자본재산업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소득공제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세법에 신설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.

나.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·공급하는 토지도 포함함.

다.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함.

라.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 종)를 재정경제원장관(참조: 기본법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및 주소